

학칙개정 사유서

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한 인턴십학기제 표시 삭제, 고등교육법에 명시한 수업의 범위 명시, 스쿨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학적처리방안, 교육과정 운영방안 변경에 따른 세부 사항 반영 등이 필요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

2013년 12월 23일

청 강 문 화 산 업 대 학 교 총 장